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 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낮은 처벌,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